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8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조정실 연구관리팀 장혜정 / 02-2023-8060 chang@kinu.or.kr
정책명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방식을 중심으로		
선정기준	대북/통일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과제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p>○추진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북한 비핵화 추진’ (93번)을 제시하고, 주요내용으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를 제시하였는데, 현재의 국제정세 하에서는 개별국가 차원의 독자적 제재조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li> <li>- 미국은 1990년대부터 ‘2차 제재’ 방식을 통해 제재 대상국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조치를 취해 왔으며,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 과 2017년 「미국의 적대세력에 대한 통합 제재법」 에서 북한에 대해 ‘2차 제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고 UN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북한에 대한 ‘2차 제재’ 방식 적용이 본격화될 가능성 다대</li> <li>- 그러나 ‘2차 제재’ 방식은 미국과 어떠한 연계점도 없다는 점에서 가장 논쟁적인 역외적 조치(extraterritorial measures)이며, 이에 따라 제재 대상국은 물론 제3국들도 ‘2차 제재’ 방식에 크게 반발</li> <li>-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2차 제재’ 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 존재</li> </ul> <p>○추진기간: 2023.1.1. ~ 2023.12.31.</p> <p>○총사업비: 38백만원</p>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제재’ 방식에 대한 개괄적 이해</li> <li>- 외교정책수단으로서 ‘2차 제재’ 의 효과 및 파급력</li> <li>- ‘2차 제재’ 방식의 주요 쟁점</li> <li>-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모색</li> </ul>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p>○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안자: 황수환 부연구위원</li> <li>- 최종 결재자: 원장</li> </ul> <p>○사업 관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수환 외</li> </ul>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관련 정부부처 ○ 대학 및 대학부설 지역연구소 ○ 국책연구기관 ○ 민간전문연구소 등
------------------	---